

출판사의 납본 인식을 통한 납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Methods for Legal Deposit System in Korea through Publishers' Recognitions about Legal Deposit

오 선 영 (Sun Young Oh)*

정 연 경 (Yeon-Kyoung Chung)**

초 록

납본은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 수집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국가도서관에서는 출판사의 납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형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형 출판사들은 국가도서관의 적극적인 납본 홍보에도 불구하고 납본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 납본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납본에 관한 인식과 납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납본제도의 개선이 납본대상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을 위한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실질 적용, 납본기관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납본 절차의 간소화가 납본서류 작성의 편리화, 납본서와 납본 보상 청구서의 일원화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납본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납본 온라인 시스템에서 납본서류 작성, 납본여부 실시간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납본 홍보 방법이 납본 교육의 의무화, 홍보 우편의 방법 개선,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와 출판유통업체를 통한 홍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National libraries have an obligation to meet the information needs of users by collecting as many various materials as possible. As legal deposit accounts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collection building methods of national libraries, they are trying to encourage the legal deposit of the publishers. However, the rate of legal deposit for the most publishers are pretty low.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s of legal deposit system for the purpose of helping legal deposit of national libraries improve smoothly has been investigated by identifying the problems with the legal deposit system that publishers had and by suggesting the matters that sh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recognition of legal deposit by publishers. The plans for the revitalization of legal deposit for the publishers are as follows: promoting factors of legal deposit systems such as scope, deadline, compensation, fine and legal deposit libraries, simplification of legal deposit procedures, set-up of automated online system for legal deposit and strengthening of the method for promoting and educating the legal deposit.

키워드: 납본, 국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납본 온라인 시스템, 한국문헌번호센터
Legal Deposit, National Libraries,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Assembly Library,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Publishers, Legal Deposit Online System, Korean Standard Number Center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sy2the2005@naver.com)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ykchung@ewha.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2년 10월 31일 논문심사일자 : 2012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자 : 2012년 12월 9일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국가도서관은 다양한 장르와 형태의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국가도서관의 도서 수집은 납본,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납본이 도서수집의 방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납본이란 출판사들이 도서 출판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출판물을 제출해야 하는 국가도서관법으로 국가의 장서를 원활하게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 납본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납본접수창구의 연장기관 역할을 하는 대행업체로 선정되어진 대한출판문화협회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대형출판사의 납본율은 높지만, 소형출판사는 매우 낮다.

그래서 국가도서관에서는 납본율이 낮은 출판사를 따로 분류해놓고 이들에게 납본 리플렛을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전화해서 납본 독려를 하고 있으며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어진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협력하여 출판사의 납본 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역할은 납본을 일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들의 납본접수 업무를 하는 것이고, 납본접수를 받은 도서들이 협회를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 납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납본의 주체가 되는 출판사들의 입장에서는 납본절차가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출판사에 이득이 되지 않아 납본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출판사들이 갖고 있는 납본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살

펴보고 납본 시스템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알아보고 납본이 근본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납본을 해야 하는 출판사들의 납본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조사해서 납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납본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서지와 납본의 연관성, 도서관과 출판사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납본기관과 출판사의 인식도 연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출판사들의 납본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을 하였다. 대상은 납본을 잘하는 출판사들과 납본을 잘 하지 않는 출판사들을 기준으로 2011년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납본한 출판사 중에서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50곳과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50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담당자서와 출판사의 납본담당자와의 면담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2012년 3월 19일에서 4월 13일까지 전화 및 이메일, 직접 방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했고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로부터 37부,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로부터 35부, 총 72부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이 중 추가 면담을 수락한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4곳과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6곳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심층면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판사의 납본을 활

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3 선행연구

국내의 납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납본처의 분리, 즉 국립중앙도서관, 문화관광부, 국회도서관의 삼원화를 지적하고 전반적인 납본의 배경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납본시스템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고, 2000년대 후반에는 국내와 국외의 납본체계를 비교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우선, 납본의 배경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국내 연구로 김미선(1989), 이상미, 유병도, 정진희(2001), 정철호(2002), 윤희운(2003a: 2003b), 박조원, 이재진, 이승선(2008)의 연구가 있다. 모두 납본 기관의 단일화, 납본 기한, 납본 대상자료, 납본 부수, 납본 보상법의 개선과 납본 벌칙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명순(2001), 신인용(2002), 노영희(2009)는 국가별 납본제도와 법령을 중심으로 납본의 역사, 대상, 기간 및 부수, 보상금으로 나누어 한국과 비교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에 대한 국외연구는 주로 납본의 배경과 전자출판사의 납본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Bakowska(2002)는 폴란드에서의 납본과 출판사의 관계 및 납본독려의 개선점을 제시하였고 Gatenby(2002)는 호주의 저작권법 배경과 전자납본이 활성화 되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였다. Anderson(2008)은 미국의회도서관에서 납본과 저작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Cordereix(2008)는 전자납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프랑스의 웹 사이트의 자동적인 수집,

특정 참고사서가 선정한 주제에 대한 자료 수집, 웹 사이트 생산자가 하는 납본 방법을 제시하였다. Gibby와 Green(2008)은 영국 도서관의 납본 배경과 출판사와 도서관의 관계를 살펴보고 전자 납본의 활성화 방안을, Royan(2008)은 남미의 전자납본과 납본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서지와 납본의 연관성에 관련된 연구로 김미선(1989)과 정철호(2002)는 국가서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완벽한 납본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는 국가도서관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하였다. Scott(2001), Yokoyama(2006), Paradisi(2008)도 각 나라에서의 전자자료의 납본과 국가서지의 연관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납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도서관과 출판사의 협력과 관련하여 윤희운(2003c)은 납본에 대한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관계를 언급하고, 두 곳이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Byford(2002)는 영국의 납본도서관과 출판사의 협력을 위해 납본도서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여 영국의 5개 도서관에 도서 장르에 따라 납본할 수 있는 도서의 범위를 정했는데 이에 관한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하며, 전자납본에 대해서 무단복제나 복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납본에 대한 출판사의 인식만을 다룬 국내 연구는 없었으며, 외국의 경우, Whitehead(1995)는 도서관에서의 납본과 납본에 대한 출판사들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Penzhorn, Synman과 Synman(2007)은 남아프리카 출판사들의 납본에 대한 순응도를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Turner(2008)는 전자납본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도를 알아보고 시청각자료와

멀티미디어자료의 납본 필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국가도서관에서 오디오자료에 관한 납본 수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Tokuhara(2009)도 국회도서관의 납본율을 올리기 위해 납본기관들의 납본인식도를 조사하였는데, 납본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이상과 같이 납본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납본의 배경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외국의 연구는 전자 자료의 납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 출판사의 납본에 관한 인식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어서 납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출판사의 입장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납본의 의의

2.1 납본제도의 개념 및 구성 요소

납본제도는 국가에서 출판되는 자료들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며 국가서지 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납본제도는 도서를 발행한 후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2부를 제출해야 하는 국가도서관법이다. 윤희운(2003a)은 납본제도가 한 국가의 출판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안전하게 보존함으로써 당대의 이용은 물론 후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납본제도의 중요성은 출판물의 체계적 수집, 국가서지의 생산과 배포, 국가출판통계의 작성, 저작권의 보호, 교환 자료의 확보, 지식문화의 보존과 계승

에 있다고 하였다.

1537년 12월 28일에 프랑수아 1세가 자기 통치하의 학술학문의 진보를 후세에 남기려고 몽펠리에 칙령을 공포하고, 도서의 검열과 출판에 대한 특권 부여를 목적으로 출판사들이 새로 출판한 모든 도서를 왕립도서관에 무료로 1부를 납본하도록 한 것이 납본제도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다(신인용 2002). 한국의 납본제도는 1907년 『광무 신문지법』에 처음 규정되었으며 본격적인 납본제도의 효시는 1909년 2월 23일 구한말 법률 제6호로 제정·공포된 『출판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률은 일본의 『출판조례』를 모방해 제정되었으며 1945년 미 군정청에 의해 폐지되기까지 약 35년간 출판 탄압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었다(박조원, 이재진, 이승선 2008). 그래서 우리나라의 납본제도는 조선총독부가 출판물의 검열과 언론 통제를 위해 1920년경에 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공보처에서 제대로 된 납본업무가 시작되었고, 1963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된 도서관법과 1965년 3월 26일에 제정·공포된 동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으로 확립되었다(정철호 2002). 그리고 2009년 3월 25일의 도서관법 및 동법 2009년 9월 26일에 일부 개정된 도서관법 제20조에 근거해서 도서관자료의 납본을 받고 있다.

한편, 윤희운(2003a)은 납본제도의 구성 요소를 피납본기관, 납본대상자료의 범주, 납본부수와 납본시한, 납본보상과 제재조치로 제시하였다. 첫째, 피납본기관이란 자료를 생산하는 주체가 납본하는 곳으로 단일기관인 국가도서관으로 집중되는 경우와 여러 국가기관으로 분산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납본대상자료의 범주는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출판물의 오

프라인 자료까지 규정하고 있다. 셋째, 납본부수와 시한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 넷째, 납본보상의 경우, 대다수 국가는 무보상주의를 채택하여 납본주체가 생산비 및 우송비를 부담하는데 독일, 일본, 한국은 소매정가의 절반에 상당하는 납본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납본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대개는 자발적 납본을 유도하지만 일부 국가는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2.2 납본기관과 출판사의 납본

2.2.1 국내 납본기관

납본기관은 납본법에 의거하여 출판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납본을 독려할 수 있으며, 출판사로부터 납본 받은 자료를 후세를 위해 도서관에 보존해야 한다(Lariviere 2000). 납본기관의 유형은 단일기관인 국가도서관으로 집중되는 경우와 여러 국가 기관으로 분산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납본의무 이행에 따른 편익 제공을 위해 납본기관들은 상호 협의하여 경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납본대행기관의 범위를 출판전문유

통단체와 대행서점까지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납본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문화관광부의 위임을 받은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유통업체(교보문고, 릴리스업체)가 있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출판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함으로써 국가 서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보존과 전송해야 할 사명이 있다(정철호 2002).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는 납본·구입·기증·국제교환·자체생산으로 이루어지며 납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관련법규는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르고 있는데, 그 내용과 납본 대상 자료 및 부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둘째, 국회도서관의 납본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심의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공공단체, 연구단체 등 각급 단체 및 개인의 자료이용에 적극적으로 봉사한다는 취지 아래 폭 넓고 심도 있는 자료의 수집을 위해 납본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도서관에서는 국회의 입법 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1963년 제정된

<표 1>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관련법규

구분	내용
관련법규 (도서관법 제20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를 제외)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납본대상자료 및 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자료: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및 가제식 자료, 슬라이드, 음반 미 카세트자료, 비디오, 시청각 자료 등 • 납본부수: 2부로 지정, 디지털파일(장애인용)은 1부 납본

국회도서관법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관련법규의 내용과 납본대상자료 및 부수는 <표 2>와 같다.

셋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964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납본 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다. 출판사들이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서 납본을 하려면 간행물 납본의뢰서 1부, 납본도서, 출판사등록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납본대행약정서가 필요하다. 납본대상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납본대상자료를 참고하여 납본해야 한다. 납본에서 제외되는 자료는 따라 쓰기, 그리기, 색칠하기, 아동교구, 포켓북, 퍼즐, 카드, 낱장자료, 스티커북, 일회성자료(다이어리, 일지 및 기록장 등)가 있다.

넷째, 교보문고는 신속한 납본을 위해 신간도서 납품 시 교보문고에서 납본도서를 접수하여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 납본하게 된다. 교보문고를 통해서 납본하기 위해서는 첫째, 납본도서 별도포장 후에 간행물 납본의뢰서, 거래명세서를 첨부하고, 둘째, 포장이나 박스 위 납본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거래명세서 정가 0을 표기한 후, 셋째, 교보문고 제1물류창고(봉일천)에서 접수를 통해 대한출판문화협회로 납본하게 된다.

다섯째, 신간도서 보도자료 릴리스업체(여산

통신, 브라가 서비스, 북PR미디어)도 납본대행 역할을 하는데, 신간 보도자료 발송시, 납본도서를 보내면 대한출판협회를 통하여 납본하게 된다.

2.2.2 출판사의 납본

우리나라에서 납본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이외의 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이외의 자의 범위는 출판사, 인쇄소, 그리고 발행자 즉 개인도 포함하고 있다(신인용 2002). 그러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전자출판물은 다양한 주체(저자, 제작사 등)가 발행 또는 생산의 책임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체(제공자, 중개자, 수입업자 등)가 발신 및 유통과정에 참여한다. 따라서 납본 주체를 확대하되 인쇄문헌의 출판·발행자·시청각자료 및 마이크로자료의 제작자 또는 패키지형 전자출판물의 제작·생산·배포자,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생산·유통자, 일정 부수(100부 기준) 이상의 외국자료 수입자로 구분이 필요하다(윤희운 2003c).

대한출판문화협회(2011)에 따르면, 38,170개의 출판사가 설립 신고를 했으나 2011년에 한편의 책도 발행하지 않은 무실적 출판사 수는 전

<표 2> 국회도서관의 납본관련법규

구분	내용
관련법규 (국회도서관법 제7조2항)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료의 2부를 초판 및 개정판에 한하여 납본해야 한다.
납본대상자료 및 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자료: 국내 일반도서, 비 도서자료,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일반도서(국내에서 발행되는 단행본 포함) - 비도서 자료: 오디오, 비디오, 마이크로폼, 오디오북 등 - 연속간행물: 잡지 및 학술자료 등 • 납본대상 제외 자료: 학습용 자료, 공무원수험서, 자격증관련 수험서, 특정종교나 상품을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 오락용 출판물 등 • 납본부수는 국내일반도서와 연속간행물은 2부, 비도서 자료는 1부

체의 93%에 해당하는 30,555개였다. 이렇게 대형 출판사 몇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실적 출판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출판사들의 자발적인 납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납본제도에서는 납본의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못해서 출판사들은 납본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3. 납본에 대한 출판사의 인식 및 요구 분석

3.1 조사 개요

납본에 대한 출판사의 인식현황 및 요구를 파악하고자 국내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 이메일 조사, 방문 조사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2011년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납본순위별 상위 50곳(납본율 90% 이상), 하위 50곳(납본율 10% 이하)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화 조사로 설문 참여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설문에 응해주겠다는 출판사로 이메일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이메일 응답이 어려웠던 출판사들은

직접방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37부,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35부로 총 72부를 회수하였다.

3.2 현황 조사 결과

3.2.1 응답자 일반사항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의 담당자 근무기간은 1-5년 미만인 11명(29.7%), 5-10년 미만인 10명(27.0%), 10-15년 미만인 6명(16.2%), 15-20년 미만인 5명(13.5%), 20년 이상 5명(13.5%)의 순서였다.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 담당자의 근무기간은 5-10년이 13명(37.1%), 1-5년이 11명(31.4%), 15-20년이 4명(11.4%), 20년 이상 4명(11.4%), 10-15년이 3명(8.6%)의 순서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납본 업무는 근무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직원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2 출판사 현황

첫째,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는 과반수가 출판사를 시작한 지 30-45년 미만으로 꽤 출판 역사가 길었으나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의 대부분은 15년 미만으로 출판 역사가 짧았다(〈표 3〉 참조).

〈표 3〉 출판사 시작년도

구분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응답수(건)	응답률(%)	응답수(건)	응답률(%)
1~15년 미만	3	8.1	28	80.0
15~30년 미만	7	18.9	4	11.4
30~45년 미만	19	51.4	2	5.7
45~60년 미만	5	13.5	1	2.9
60년 이상	3	8.1	0	0.0
계	37	100.0	35	100.0

둘째, 납본 기간을 조사한 결과,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는 30-45년 미만이 약 30%, 15-30년 미만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나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는 89%가 1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셋째,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 2곳만이 납본을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1명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납본과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넷째, 2011년 한 해 동안 발행한 출판물의 권수와 납본비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납본율과 상관없이 100권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으나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는 200-300권 미만(13.5%)과, 100-200권 미만(10.8%)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던 반면에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는 89%가 100권 미만으로 매우 영세하였다(〈표 5〉 참조).

다섯째, 2011년 출판물의 납본율을 조사한 결과,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는 모두 납본이 78.4%, 75-100% 미만 납본이 21.6%라고 응답하였는데,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의 70% 이상이 출판물의 반 이상을 납본하였다고 해서 실제 납본율과 출판사가 주장하는 납본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6〉 참조).

〈표 4〉 납본시작년도

구분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응답수(건)	응답률(%)	응답수(건)	응답률(%)
1~15년 미만	7	18.9	31	88.6
15~30년 미만	10	27.0	1	2.9
30~45년 미만	11	29.7	2	5.7
45~60년 미만	1	2.7	0	0.0
60년 이상	1	2.7	0	0.0
무응답	7	18.9	1	2.9
계	37	100.0	35	100.0

〈표 5〉 출판사의 발행출판물 권수

구분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응답수(건)	응답률(%)	응답수(건)	응답률(%)
1~100권 미만	22	59.5	31	88.6
100~200권 미만	4	10.8	1	2.9
200~300권 미만	5	13.5	2	5.7
300~400권 미만	2	5.4	0	0.0
400권 이상	3	8.1	0	0.0
무응답	1	2.7	1	2.9
계	37	100.0	35	100.0

〈표 6〉 발행 출판물에 대한 납본율

구분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응답수(건)	응답률(%)	응답수(건)	응답률(%)
1~25%	0	0.0	1	2.9
25~50%	0	0.0	8	22.9
50~75%	0	0.0	24	68.6
75~100% 미만	8	21.6	1	2.9
100%	29	78.4	1	2.9
계	37	100.0	35	100.0

3.2.3 납본현황

모든 출판사는 국가도서관에서 납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출판물의 데이터 보관으로 보았다(〈표 7〉 참조).

그리고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납본대상, 납본

부수, 납본기한, 납본보상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납본기한에 대해서만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가 더 잘 알고 있었으며 납본부수에 대해서는 납본율이 낮은 출판사가 더 잘 알고 있었다(〈표 8〉 참조).

〈표 7〉 납본제도와 국가도서관 기능

구분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응답수(건)	응답률(%)	응답수(건)	응답률(%)
납본출판물 데이터보관	32	44.4	27	38.6
통계적인 정보의 수집	15	20.8	15	21.4
국가문화유산 자료보존	11	15.3	12	17.1
납본자료조사 및 개발	7	9.7	8	11.4
납본보관데이터의 개발	5	6.9	4	5.7
국가서지의 출판	2	2.8	4	5.7
계	72	100.0	70	100.0

〈표 8〉 납본제도 인지 현황

구분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응답수(건)	응답률(%)	응답수(건)	응답률(%)
납본부수	33	30.8	31	35.6
납본대상	28	26.2	25	28.7
납본기한	27	25.2	17	19.5
납본보상금	16	15.0	11	12.6
납본과태료	3	2.8	2	2.3
기타	0	0.0	1	1.1
계	107	100.0	87	100.0

납본 부수 2부의 적합성에 대해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는 거의 모두가 타당하다고 했으나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 중 31%는 적당하지 않으며 도서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부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납본 기한은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는 87%가 준수하고 있었던 반면에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는 69%가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본 보상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출판사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다만 보상금 50%의 적용에 대해서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의 23%는 적절치 못하다고 하였다.

납본절차의 장애요인으로는 제출 서류의 복잡성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납본율의 높은 출판사는 납본 재확인의 불편함을,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는 기타 요인으로 납본의 절차 자체

를 잘 모르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 주된 것이었다(〈표 9〉 참조).

출판사들은 대부분 대행기관의 납본접수처를 이용하여 납본을 하고 있었는데,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는 대행기관 이용이 33건(91.7%)으로 가장 많았고, 도서관으로 택배발송이 3건(8.3%)으로 나타났다. 반면,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는 대행기관 이용이 33건(70.2%), 도서관으로 택배발송 8건(17.0%) 이외에도 도서관으로 직접방문 4건(8.5%), 교보문고 경유 1건(2.1%), 기타 1건(2.1%) 순으로 다양하였다.

출판사들이 특별히 대행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행업체의 전문성과 납본업무효율성이 주된 이유였으나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는 시간단축(21.7%)이 인력부족(15.2%)보다 더 큰 요인이었다(〈표 10〉 참조).

〈표 9〉 납본절차 장애요인

구분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응답수(건)	응답률(%)	응답수(건)	응답률(%)
제출 서류 복잡성	19	46.3	20	46.5
납본 비용 부담	7	17.1	6	14.0
납본 확인의 불편함	12	29.3	5	11.6
담당자 불친절	1	2.4	0	0.0
기타	2	4.9	12	27.9
계	41	100.0	43	100.0

〈표 10〉 납본 대행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구분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응답수(건)	응답률(%)	응답수(건)	응답률(%)
대행업체 전문성	19	34.5	13	28.3
납본 업무 효율성	18	32.7	12	26.1
시간 단축	7	12.7	10	21.7
인력 부족	9	16.4	7	15.2
재정상 문제	2	3.6	2	4.3
기타	0	0.0	2	4.3
계	55	100.0	46	100.0

3.2.4 납본개선방안

납본제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납본보상금, 납본기한이 가장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납본대상범위, 납본부수, 납본과태료의 순위에서 약간 차이가 났다(〈표 11〉 참조).

납본법에 저작권법을 적용시키면 납본율이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의 73%,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의 63%정도가 동의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출판사가 납본법에 저작권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저작권의 대한 책임이나 주체는 출판사보다 저자가 많으며 출판물에만 납본을 조건으로 저작권을 적용한다면 다른 다양한 저작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 27%-37%의 출판사는 투명한 저작권 정책으로 인해 출판사의 납본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납본대상 자료범주 개선사항으로는 대부분의 출판사가 출판사의 인정 기준을 고려해서 재구성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중에게 유통목적으로 생산하는 자료 우선 포함, 일정부수에 미달하는 사적자료 제외, 대상자료 이외의 자료 기재로 제시하였다(〈표 12〉 참조). 납본기한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출판사가 발행 후 30일 이내에 대해 44-48% 정도만 동의하였고 발행 후 6개월 이내가 39%를 차지하여 납본 기한의 조정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표 13〉 참조). 그리고 납본보상금에 관해서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전문유통단체의 납품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과 납본보상 합의체를 구성하여 보상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시했고 그 다음으로 실비 보상을 원했다(〈표 14〉 참조).

〈표 11〉 납본제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구분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납본대상범위	1 (2.7)	4 (10.8)	6 (16.2)	17	4 (11.4)	1 (2.9)	6 (17.1)	20
납본부수	3 (8.1)	1 (2.7)	4 (10.8)	15	4 (11.4)	9 (25.7)	3 (8.6)	33
납본기한	6 (16.2)	9 (24.3)	1 (2.7)	37	6 (17.1)	8 (22.9)	4 (11.4)	38
납본보상금	14 (37.8)	3 (8.1)	0 (0.0)	48	11 (31.4)	6 (17.1)	3 (8.6)	48
납본과태료	1 (2.7)	1 (2.7)	1 (2.7)	6	3 (8.6)	2 (5.7)	1 (2.9)	14
기타	3 (8.1)	0 (0.0)	1 (2.7)	10	4 (11.4)	0 (0.0)	0 (0.0)	12
무응답	9 (24.3)	19 (51.4)	24 (64.9)	89	3 (8.6)	9 (25.7)	18 (51.4)	45
계	37 (100)	37 (100)	37 (100)		35 (100)	35 (100)	35 (100)	

총점 = 1순위 * 3 + 2순위 * 2 + 3순위 * 1

〈표 12〉 납본대상 자료범주

구분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응답수(건)	응답률(%)	응답수(건)	응답률(%)
출판사 기준에 맞게 재구성	19	38.0	13	29.5
유통목적자료우선	15	30.0	11	25.0
일정부수미달 사적자료제외	10	20.0	12	27.3
대상제외자료 기재	6	12.0	6	13.6
기타	0	0.0	2	4.5
계	50	100.0	44	100.0

〈표 13〉 납본기한

구분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응답수(건)	응답률(%)	응답수(건)	응답률(%)
발행과 동시에	2	5.4	0	0.0
발행 후 일주일 이내	2	5.4	1	2.8
발행 후 20일 이내	0	0.0	3	8.3
발행 후 30일 이내	18	48.6	16	44.4
발행 후 60일 이내	14	38.9	14	38.9
공공에 배포 전에	1	2.7	2	5.6
기타	0	0.0	0	0.0
계	37	100.0	36	100.0

〈표 14〉 납본 보상금의 기준

구분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응답수(건)	응답률(%)	응답수(건)	응답률(%)
전문유통단체 납품가격	12	30.0	12	30.0
보상협의체 구성	11	27.5	12	30.0
실비보상	8	20.0	9	22.5
납본대상에 따라 차별 적용	6	15.0	6	15.0
기타	3	7.5	1	2.5
계	40	100.0	40	100.0

납본절차의 개선 사항으로 대부분의 출판사가 1순위로 제출 서류의 간소화와 납본방법의 편리성을 들었다(〈표 15〉 참조).

납본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납본부서의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는 특히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을 가장 많이 강조하였다(〈표 16〉 참조).

그리고 납본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과 출판사가 협력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1순위 부터 3순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도서관 홍보 활성화와 납본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표 15〉 납본절차 개선방안 우선순위

구분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서류의간소화	16 (43.2)	8 (21.6)	3 (8.1)	67	14 (40.0)	6 (17.1)	6 (17.1)	60
납본비용축소	7 (18.9)	2 (5.4)	11 (29.7)	36	6 (17.1)	5 (14.3)	8 (22.9)	36
납본방법개선	8 (21.6)	16 (43.2)	1 (2.7)	57	10 (28.6)	17 (48.6)	1 (2.9)	65
담당자의 태도	1 (2.7)	2 (5.4)	3 (8.1)	10	0 (0.0)	0 (0.0)	0 (0.0)	0
기타	1 (2.7)	0 (0.0)	0 (0.0)	3	5 (14.3)	0 (0.0)	1 (2.9)	16
무응답	4 (10.8)	9 (24.3)	19 (51.4)	49	0 (0.0)	7 (20.0)	19 (54.3)	33
계	37 (100)	37 (100)	37 (100)		35 (100)	35 (100)	35 (100)	

총점 = 1순위 * 3 + 2순위 * 2 + 3순위 * 1

〈표 16〉 납본시스템의 개선방안 우선순위

구분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납본부서강화	9 (24.3)	6 (16.2)	8 (21.6)	47	11 (31.4)	1 (2.9)	6 (17.1)	41
자동화 시스템	14 (37.8)	6 (16.2)	3 (8.1)	57	19 (54.3)	8 (22.9)	5 (14.3)	78
온라인 시스템	6 (16.2)	9 (24.3)	4 (10.8)	40	2 (5.7)	8 (22.9)	3 (8.6)	25
명확한 시스템	6 (16.2)	8 (21.6)	8 (21.6)	42	2 (5.7)	10 (28.6)	8 (22.9)	34
기타	1 (2.7)	0 (0.0)	0 (0.0)	3	1 (2.9)	0 (0.0)	0 (0.0)	3
무응답	1 (2.7)	8 (21.6)	14 (37.8)	33	0 (0.0)	8 (22.9)	13 (37.1)	29
계	37 (100)	37 (100)	37 (100)		35 (100)	35 (100)	35 (100)	

총점 = 1순위 * 3 + 2순위 * 2 + 3순위 * 1

다른 요인들보다 더 많은 총점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납본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과 출판

계의 협력방안이나 납본에 대해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는 납본시스템의 구축에 힘써서 납본을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온라인서점에 통보가 되어 신간 도서를 온

〈표 17〉 납본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과 출판사의 개선사항

구분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독서진흥책마련	4 (10.8)	3 (8.1)	2 (5.4)	20	7 (20.0)	2 (5.7)	3 (8.6)	28
도서관홍보활성화	6 (16.2)	11 (29.7)	6 (16.2)	46	3 (8.6)	11 (31.4)	4 (11.4)	35
유통서지DB구축	6 (16.2)	1 (2.7)	3 (8.1)	23	6 (17.1)	2 (5.7)	1 (2.9)	23
국제표준도서번호	5 (13.5)	2 (5.4)	0 (0.0)	19	1 (2.9)	0 (0.0)	1 (2.9)	4
출판 시 도서목록	7 (18.9)	1 (2.7)	3 (8.1)	26	5 (14.3)	2 (5.7)	0 (0.0)	19
협력기구설치	3 (8.1)	6 (16.2)	3 (8.1)	24	3 (8.6)	5 (14.3)	5 (14.3)	24
납본가이드라인	6 (16.2)	7 (18.9)	9 (24.3)	41	8 (22.9)	4 (11.4)	2 (5.7)	34
출판사주소통보	0 (0.0)	0 (0.0)	0 (0.0)	0	0 (0.0)	0 (0.0)	6 (17.1)	6
기타	0 (0.0)	0 (0.0)	0 (0.0)	0	2 (5.7)	0 (0.0)	0 (0.0)	6
무응답	0 (0.0)	6 (16.2)	11 (29.7)	23	0 (0.0)	9 (25.7)	13 (37.1)	31
계	37 (100)	37 (100)	37 (100)		35 (100)	35 (100)	35 (100)	

총점 = 1순위 * 3 + 2순위 * 2 + 3순위 * 1

라인서점에 개별 등록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는 국가도서관이 도서수집에 있어서 특정 출판물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출판물의 수집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납본서류 작성이 복잡하여 납본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3.3 국내 출판사 심층면담

심층 면담을 수락한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4곳과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6곳, 총 10 곳의 출판사의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출판사는 모든 발행물을 일률적으로 납본하게 하기보다는 출판사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며 홍보할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납본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발행 후 30 일이라는 납본 기한을 3개월 정도로 연장하여 그에 따른 자율 권리를 주고 의무에 명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들은 납본대상의 특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가의 출판물에 대해서는 50% 이상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보상금이 너무 높아지면 생산비용의 거품 유발과 허위 증명을 통해 제도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납

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도 일률적인 50%의 보상은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상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모든 출판사들이 납본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여 출판사들이 납본에 대한 의무의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들은 납본기관의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내 도서관 현황과 출판계의 실정으로 납본기관이 분산되면 오히려 더 많은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에 국가도서관으로 집중하는 시스템이 낫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는 납본기관을 광역시, 도별로 확장하여 홍보 효과를 주고 장기적으로 장서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물론 납본기관이 확대되면 납본대상도 늘어나 도입시기에는 꺼려질 수도 있으나 보상금 상향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출판사도 적극적으로 납본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들은 대행기관에 납본을 할 때 필요한 납본의뢰서작성을 간소화해 주는 온라인등록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보문고, YES 24와 같은 대형문고에 책을 판매하기 위해 납품할 때 2권을 더 보내서 국가도서관에 납본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안하였다.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들은 도서관으로부터 미납본 통보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고 납본 증명서를 통한 공식 유통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납본 미이행시 출판권 박탈 및 추후 출판 등록이 불가능한 제재 조치, 성실하게 납본한 출판사에 대한 포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납본율이 높은 출판사들은 출판유통업체를 통해 납본 홍보를 해야 책이 발행될 때마다 도서 홍보를 위해 기자들에게 책을 주는데 그 때마다

기자들이 출판사에 납본을 홍보하게 한다면 납본을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납본율이 저조한 출판사들은 도서관의 납본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도서관으로부터 납본 홍보 우편을 받았지만 홍보 우편의 성격이 강해서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납본 홍보 우편을 보낼 때는 도서관에서 발송한 공문서임을 강조하고 해당 내용을 숙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출판사가 ISBN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문헌번호센터에 접속할 때 납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해서 납본을 독려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 납본 활성화 방안

4.1 납본제도의 개선

본 연구에서는 납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납본대상, 납본기한, 납본보상금, 납본과태료, 납본기관, 납본 절차의 간소화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납본 대상 자료 범주를 재구성해야 한다. 출판사의 발행량, 자료의 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부수를 다르게 적용하여 납본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납본심의위원회와 같은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납본 대상 자료의 부수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자료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납본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에서는 납본시기를 3개월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납본을 받고 있는데, 최소 2개월에

서 최대 3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출판 마케팅에도 지장 없이 납본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납본 보상금을 조정하고 납본 보상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납본 보상금 조정 측면에서는 납본 보상금의 비율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영세한 출판사들이 대부분인 출판계의 현황을 고려하면 모든 출판물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0%를 보상해주는 제도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출판물 납본에 대한 보상금 비율을 검토하여 고가서나 귀중서나 영세한 출판사의 출판물의 경우, 50% 이상 보상해주어 출판사들의 납본 독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납본보상합의체 구성 측면에서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출판의 생산비용이 보상금보다 높거나 정해진 소매정가가 없다면, 납본시스템의회와 논의 하에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국가도서관의 납본담당자, 출판사 납본담당자, 납본대행기관 납본담당자, 출판유통업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납본보상합의체를 구성하여 납본보상금에 대한 적합한 보상금 조정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보상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출판사들이 적합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납본 과태료를 철저히 적용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납본의무의식을 유도해야 한다. 출판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장기적으로 납본과태료의 철저한 적용은 납본에 대한 의무의식을 가져올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납본을 하지 않았을 경우,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납본을 이행하지 않는 출판사에게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여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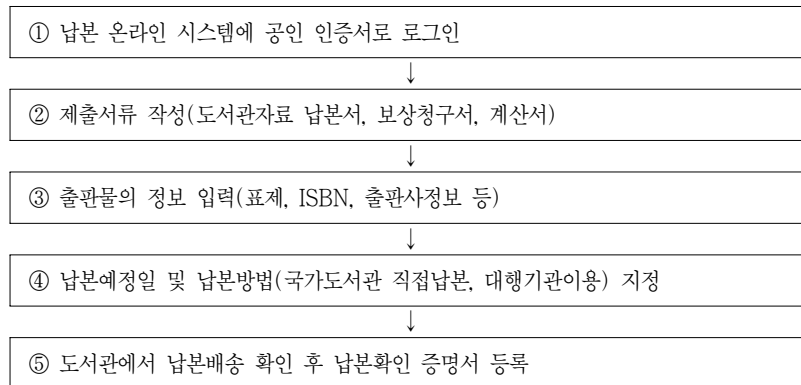
재를 해야 한다. 또한 과태료 불이행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납본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일단 해당 출판사에 ISBN 부여를 정지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출판권 박탈 및 추후 출판 등록이 불가능하게 강한 제재를 추가시켜 납본 의무를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 납본기관을 확대하여 출판전문유통단체와 대행서점까지 확대시켜 출판사들이 유통업체나 대행서점에 책을 납품할 때 책을 2권씩 더 보내어 유통업체를 통한 납본이 가능하다면 비용이 최소화되고 납본 절차도 간단해 질 것이다. 또한 납본기관을 광역시, 도별의 도서관까지 확장하여 지방의 출판사들이 국가도서관으로 책을 배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납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납본절차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납본서류 작성의 편의성을 증진시켜야 하는데 납본 할 때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본서류를 다운 받는 경로를 편리하게 해서 바로 다운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의 인터페이스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납본서와 납본 보상 청구서를 일원화시켜서 출판사에서는 납본 도서에 필요한 간단한 표제 정보만 작성하게 하고, 납본 보상 청구서는 자동적으로 청구되어 출판사들의 납본 접수를 간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4.2 납본 온라인 시스템 구축

납본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엇보다 납본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그림 1〉 납본 온라인 등록 절차 제안 내용

록 해야 한다. 미국 의회도서관에서는 출판사들이 온라인 저작권 등록국(Electronic Copyright Office)에 접속하여 납본을 등록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적게 들고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저작권을 얻을 수 있어서 납본등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에서는 인쇄물 납본과 디지털 출판물 납본을 위해서 납본 시스템(DNet)에 로그인 한 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출판물 2부를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납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본서류작성을 한 번에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만들고 서류 작성 시간을 줄여 출판사들이 납본 절차를 편리하게 생각하게 해야 한다. 또한 출판사의 납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납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등록 절차를 제안해보면 〈그림 1〉과 같다.

4.3 납본 교육과 홍보의 강화

무엇보다 납본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데 국가도서관에서는 출판사들이 ISBN을 발급받기 전에 ISBN 관련 사항에 대한 의무 교육을 사이버 교육과 대면 교육으로 하고 있다. ISBN 교육과 납본 의무교육을 연계하여 진행된다면 효율적인 납본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홍보 측면에서는 현행의 홍보 우편 방법에서 홍보 우편물의 겹봉투에 국가도서관으로부터 중요한 공문서라는 것을 표시하여 일반 홍보 우편과 확연히 구분될 수 있게 해야 하며 납본의 중요성과 납본의 과태료의 부과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출판사들의 납본독려를 해야 한다.

또한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의 납본법은 저작권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저작권 등록과 납본 등록을 동시에 홍보할 수는 없지만, 한국문헌번호센터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출판사들이 접속하는 유일한 사이트이므로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이용하여 납본을 홍보한다면 납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출판유통업체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다. 출판사들은 유통을 위해 대형문고에 납품을 해야 하므로 출판사들에게 대형문고에서

국가도서관으로의 납본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한다면 소규모나 개인 출판사들도 납본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5. 결 론

국가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이용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납본은 도서 수집의 방법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가도서관에서는 출판사들과 협력하여 납본을 독려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판사들이 납본제도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납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납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납본에 대한 현황과 일반적인 납본의 정의 및 배경과 납본제도의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 현황 조사를 위해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본율이 저조한 도서관이 출판물의 반 이상을 납본하였다고 응답해서 실제 납본율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납본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대부분의 출판사는 납본대상, 납본부수, 납본보상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납본 과태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모르고 있었다. 셋째, 납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납본보상금과 납본기한

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납본절차에 대한 장애요인으로는 제출 서류의 복잡성과 납본 완료한 도서에 대한 확인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섯째,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납본 제출 서류의 간소화와 납본 방법의 편리성을 들었다. 여섯째,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납본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일곱째, 납본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홍보 활성화와 납본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첫째, 납본대상 자료를 출판사의 기준에 맞춰서 재구성, 둘째, 납본 기한의 연장, 셋째, 납본 보상금의 개선, 넷째, 납본과태료의 철저한 부과, 다섯째, 납본 절차의 간소화, 납본 홍보 방안 개선이었다.

이상의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본 활성화 방안을 납본제도의 개선으로 납본대상 자료 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과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철저한 적용, 납본 기관의 확대를 들었다. 그리고 납본 절차의 간소화, 납본 자동화·온라인 시스템의 구축, 납본 홍보 방법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모든 출판사들의 자발적인 납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의 모든 요소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국가도서관으로의 납본을 증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미선. 1989. 납본제도에 관한 고찰: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연구지』, 14: 77-87.
- 노영희. 2009. 국내외 국가도서관 납본절차 분석을 통한 납본업무의 합리적 운영방안 도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173-189.
- 대한출판문화협회. 2011. 『한국출판연감』,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 박조원, 이재진, 이승선. 2008. 『간행물 납본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출판문화산업진흥 10조에 따른 간행물 제출 관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선명순. 2001. 국가별 납본제도 비교현황. 『도서관연구회논문집』, 77-125.
- 신인용. 2002. 『국가문헌자료 수집을 위한 납본제도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 대학원, 행정학과.
- 윤희운. 2003a. 한국의 납본제도 개선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23-52.
- 윤희운. 2003b. 한국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술발표논문집』, 16: 27-45.
- 윤희운. 2005.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전략적 제휴방안 모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4): 139-161.
- 이상미, 유병도, 정진희. 2001. 국립중앙도서관 납본활성화 방안. 『도서관연구회논문집』, 283-292.
- 정철호. 2002. 『우리나라 저작권등록제도와 납본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배재대법무대학원, 법학과.
- Anderson, Byron. 2008. "Electronic Roundup: Maintaining Balance in Copyright Law." *Behavioral & Social Sciences*, 27(2): 119-123.
- Bakowska, Ewa. 2002. "Legal Deposit in Poland: Law and Practice." *Slavic&East European Information Resources*, 3(2): 3-17.
- Byford, John. 2002. "Publishers and Legal deposit libraries co-operation in the United Kingdom since 1610: effective or not?" *IFLA Journal*, 28(5/6): 292-297.
- Cordereix, Pascal. 2008. "The Legal Deposit of Audiovisual and Multimedia material in France: the example of the Audiovisual Department of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IFLA Conference Proceeding*: 1-6.
- Gatenby, Pam. 2002. "Legal Deposit, Electronic Publications and Digital Archiving: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s Experience."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Glasgow*: 1-5.
- Gibby, Richard and Green, Andrew. 2008. "Electronic Legal Deposit in the United Kingdom." *New Review of Academic Librarianship*, 14(1/2): 55-70.
- Lariviere, J. 2000.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Legislation*. Paris: UNESCO.

- Paradisi, Federica. 2008. "Collaboration among producers of bibliographic data Achievements and planned initiatives at the Italian National Bibliography." *IFLA Conference Proceedings* : 1-11.
- Penzhorn, Cecilia, Snyman Retha Synman, and Maritha Snyman. 2008. "Implementing and managing legal deposit in South Africa: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 Library Review*, 40(2): 112-120.
- Royan, Bruce. 2008. "Legal Deposit of audio-visual materials: Situation in Latin America." *IFLA Conference Proceedings* : 1-8.
- Scott, Marianne. 2001. "Legal Deposit of on-line materials and National Bibliographies." *IFLA Conference Proceedings* : 1-3.
- Tokuhara, Naoko. 2009. "The Situation and Issues of the Legal Deposit System in Japan: From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Survey Commemorating the Sixtieth Anniversary of the Legal Deposit System." *Alexandria*, 21(2): 47-55.
- Turner, James M. 2008. "The Legal Deposit Questionnaire: a step toward gathering information about the situation worldwide." *IFLA conference Proceedings* : 1-6.
- Whitehead, Derek. 1995. "Multimedia preservation-capturing the rainbow." [online]. [cited 2012.02.11]. <<http://www.nla.gov.au/niac/meetings/>>.
- Yokoyama, Yukio. 2006. "Japanese National Bibliography in the digital environment." *IFLA Conference Proceedings* : 1-4.